

#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·운영 행위

자료제공 : 전주지방환경청

## I. 사건의 개요

### 1. 사건의 발단

2002. 8.29. 16:30경 무허가 배출사업장 일제 점검시 익산지방산업단지의 관할 사업장 소재 (주)○○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,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

### 2. 수사경위

사업장의 제품 생산공정을 토대로 사업장내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 조사 실시

### 3. 수사결과

동 사업장은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첨가물인 난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시설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6m<sup>3</sup>×1기, 5m<sup>3</sup>×1기, 회수시설 4m<sup>3</sup>×2기, 건조시설 4m<sup>3</sup>×2기 등 총 5기를 사업장내에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함

## II. 사건 수사추진 일지

- 2002. 8.29. 무허가 배출사업장 일제 점검시 (주)○○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사항 적발
- 2002.9.5. 환경범죄인지 보고(사법경찰관→청장)

- 2002.8.30. 피의자출석요구(사법경찰관→피의자)
- 2002. 9. 5. 피의자 신문
  - 피의자 신문조서, 주거진술서, 수사자료표 작성
- 2002. 9. 6. 피의자 범죄경력조회(사법경찰관→전주북부경찰서)- 수사자료표 첨부
- 2002. 9.19. 수사결과보고(사법경찰관→청장)
- 2002. 9.19. 사건송치서류 작성(사법경찰관)
  - 사건송치서, 의견서 등
- 2002. 9.20. 사건송치(사법경찰관→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건과)

## III. 수사활동 상황

### 1. 사건의 인지

2002. 8.29. 무허가 배출사업장 일제 점검시 익산지방산업단지의 관할 사업장 소재 (주)○○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,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6m<sup>3</sup>×1기, 5m<sup>3</sup>×1기, 회수시설 4m<sup>3</sup>×2기, 건조시설 4m<sup>3</sup>×2기 등 총 5기를 사업장내에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함

### 2. 사건의 입건

(주)○○에서 설치 운영중인 시설 중 반응시설 6m<sup>3</sup>×1기, 5m<sup>3</sup>×1기, 회수시설 4m<sup>3</sup>×2기, 건조시설 4m<sup>3</sup>×2기 등 총 5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

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 사업장 대표이사과 법인인 (주)○○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

### 3. 범죄사실(수사결과)

(주)○○는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첨가물인 난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,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반응시설 6m<sup>3</sup>×1기, 5m<sup>3</sup>×1기, 회수시설 4m<sup>3</sup>×2기, 건조시설 4m<sup>3</sup>×2기 등 총 5기를 사업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을 억제하는데 첨가제로 사용되는 난연제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것임.

### 4. 사건의 송치

이에 전주청에서는 2002. 9. 20. 피의자 ○○○와 법인인 (주)○○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관할지검(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)에 불구속 기소함.

## IV. 수사결과와 분석·평가

### 1. 총 평

산업단지협의회로부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현황을 파악한 후 전주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배출시설

설치 운영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, 익산산업단지 소재 (주)○○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반응시설 6m<sup>3</sup>×1기, 5m<sup>3</sup>×1기, 회수시설 4m<sup>3</sup>×2기, 건조시설 4m<sup>3</sup>×2기 등 총 5기를 사업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을 억제하는데 첨가제로 사용되는 난연제를 생산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관할지검에 불구속 기소함.

### 2. 잘된 점

산업단지협의회로부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현황을 파악 후 전주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적발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도록 함.

## V. 참고사항

### 1. 수사시 착안사항(수사 노하우 등)

환경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점검 실시가 필요함

### 2. 수사과정 중에 드러난 특이사항

동 사업장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타 관련법에 근거한 인허가는 이행하였으나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음.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법규와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